

영상물 저작권법 개정안

기준의 일부개정안 2013. 5. 5. 18/10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 의견서

저작권산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에만 치중한 최재천 의원 대표 발의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

- 지난 1월 17일, 최재천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정 사항 이행을 주요 이유로 삼고 있지만, 국내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문화산업 환경을 저해하는 개정안이다.
- 현재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유통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의 급증을 초래하여
 - 합법저작물 침해 규모 증가로 전반적인 콘텐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 정부·저작권자·콘텐츠 산업계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울인 수년 간의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 것이다.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은 바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의 책임을 이용자들에게로 전가시키는 것이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로 인한 부당 이익을 쟁기는 동안,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갈등만 심화될 것이다.
- 삭제를 요구한 저작권법 제104조,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안인데, 현재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삭제한다면,

- 작년 5월 이후 웹하드 등록제 도입을 통해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온라인 합법콘텐츠 유통 시장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타법(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 우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통해 이익만 쟁기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단체 협의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 SBS콘텐츠허브, IMBC, KBS미디어,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로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주)네그, 대원씨아이, 유니버셜뮤직,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주)대원미디어, (주)서울문화사, 동우A&E, 선우엔터테인먼트, 오콘

감사 연락처: 영상을 보호하기 위한 김판희 본부장